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5. 3. 6.
- 회부일자 : 2025. 4. 1.
- 상정일자 : 2024. 4. 7.

### 2. 제안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LPG 공급시설 설치비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지원 대상 선정(안 제5조)
- 지원 사업 위탁근거 마련 및 협약체결(안 제6조~제7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서 군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군수의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세부 기준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지원)에서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지원 대상 선정)에서 사업가능성, 사업비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사업위탁)에서 LPG 공급시설의 설치와 배관 공급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5. 종합검토의견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지자체 사무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략)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 2.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제7조(주관기관 등)**① 주관기관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권역별 사업 통합 수행 등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 13. (생략)
  -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④ ~ ⑤ (생략)

##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시·도 또는 시·군·구의 LP가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기관"이란 주관기관의 위탁수행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말한다.
4. "위원회"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스시공자를 말한다.
6. "소비자"란 주택에 거주하는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가구로서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7. "검수"란 공사의 사업기관이 가스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

**참고 자료**

## □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2024.10.11.) 외 19건

(관내 4곳: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영월군, 홍천군)